#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오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73

발의연월일: 2020. 7. 17.

발 의 자:조오섭·송갑석·민형배

이형석 · 이용선 · 장경태

이병훈 · 신정훈 · 이해식

김경만 · 문진석 · 양향자

윤재갑·강은미 의원

(14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2020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.4%로 명시되어 있음.

그런데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여전히 노동취약계층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고, 실제로 2019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37.3%, 34.9%에 그쳐,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

1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4년간 3.4%부터 3.8%까지 도달하도록 점진 적으로 상향조정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실업문 제를 해결하려는 것임(안 제27조, 제28조의2 및 제79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7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: 1천분의 34
- 2.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: 1천분의 36
- 3. 2024년 이후: 1천분의 38

제28조의2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: 1천분의 34
- 2.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: 1천분의 36
- 3. 2024년 이후: 1천분의 38

제79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: 1천분의 34
- 2.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: 1천분의 36
- 3. 2024년 이후: 1천분의 38

## 부 칙

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7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27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) ① -----장애인 고용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. 1.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.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: 1천분의 32 12월 31일까지: 1천분의 34 2. 2019년 이후: 1천분의 34 2.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: 1천분의 36 3. 2024년 이후: 1천분의 38 ② ~ ⑦ (생 략) ② ~ ⑦ (현행과 같음) 제28조의2(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제28조의2(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의 특례) 제28조에도 불 고용률의 특례) -----구하고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| 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 공사・지방공단과 「지방자치 단체 출자・출연 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기 관·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 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

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 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 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.

- 1.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12월 31일까지: 1천분의 32
- 2. 2019년 이후: 1천분의 34

제7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)
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 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이상 고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.

- 1.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12월 31일까지: 1천분의 29
- 2. 2019년 이후: 1천분의 34

<u>.</u>
1.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
12월 31일까지: 1천분의 34
2.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
12월 31일까지: 1천분의 36
3. 2024년 이후: 1천분의 38
제7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
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)
①
•
1 000113 10 10 Hr 000113
1.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
12월 31일까지: 1천분의 34
2.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

12월 31일까지: 1천분의 36

	3. 2024년 이후: 1천분의 38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